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고찰*

- 경찰관과 대학생의 인권보호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Protecting Human Rights among Police Officers and University Students

김재민**

차 례

- | | |
|------------------|-----------------|
| I. 서론 | IV. 조사결과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어 |
| III. 연구의 설계 및 한계 | |

국문요약

올바른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의 정립되면 경찰관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정책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률상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여 피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관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크게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진단' 변수와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의 구체적 실현' 관련 변수로 구분된다. 대학생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통변수 각각에 대하여는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해 보았고,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에 관해서는

2013년 연구결과와의 비교도 시도하였다.

위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이 2013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다고 판단되나 그 인권의식의 구체적 실현은 아직 미진한 수준에 놓여 있고,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수준에 관하여 일반인(대학생)들과 경찰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현직 경찰관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격존중과 같은 본질적 사항보다는 제도 개선과 같은 외형적 조건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인권의식 함양 방안으로서 공감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인권보호 주체별 특화된 인권교육 시행,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전문인력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6S1A5A2A01022720).

**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증원,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적극적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접촉하는 자들이 인간애에 바탕을 둔 올바른 인권의식을 행동으로 발현해 나감으로써 범죄피해자들로 하

여금 범죄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되찾게 해 준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를 '회복적 정의의 원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인권의식

I. 서론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은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매 5년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액이 향상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형사사법기관의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수사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연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반복조사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1.7%를 차지했으며, 사건처리 결과가 부당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23.8%에 이르렀다.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2010년도 조사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답변이 35.6%로서 2006년의 36.4%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¹⁾ 1998년 10월

에 발생했던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이나²⁾ 1999년 5월에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³⁾에서도 피해자 가족들은 한결 같이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의 호소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아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원망한 바 있다. 이로 보건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는 법률과 제도와 개선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의식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경찰관의 올바른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의 정립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정책의 성과를 가를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식은 비단 경찰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다.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은 향후 피해자의 법률상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여 피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과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 실태의 상호 비교를 통해 그 현황을 진단해 보는 한편,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에 있어서 경찰관과 대학생 간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⁴⁾

- 1) 김지선·김성언,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A-03, 2015, 231쪽, 239쪽.
- 2) <http://www.nocutnews.co.kr/news/4822014> (2017. 8. 10.검색). 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단순한 교통 사망사고로 처리하면서 살인행위 등 여타 범죄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3)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1500204> (2017. 8. 10.검색). 이 사건 역시 피해자 가족들이 주변 용의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으나 이행이 안 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4)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로서는 우선 김상희·조병인

Ⅱ. 이론적 배경

1.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의미

범죄자의 인권과 범죄피해자의 인권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언뜻 우문(愚問)처럼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범죄자의 인권보다 더 중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사회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한 존재이기에 법률로써 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⁵⁾ 범죄피해자는 범죄행위에 의해 그가 당연히 누

의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0-06, 1991, 78쪽)”를 들 수 있으나 이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주안점을 둔 연구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정의롭음에 의해 수행된 “경찰관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11, 48-49쪽)”는 피해자의 인권의식을 수사경찰관의 3가지 수사행태(정보제공, 출석요구, 신변안전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재민의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3, 5-31쪽)”는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측정 변수를 크게 ‘① 인권보호의 중점’, ‘② 경찰대응시 피해자 보호의 수준’, ‘③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팀) 운용에 대한 견해’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권의식의 측정을 시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설충기에 의해 수행된 “경찰관의 인권의식 조사를 통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효화 방안(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2014, 47-66쪽)” 연구는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을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측정해보고자 하는 연구로써 위 김재민 연구의 ‘인권보호의 중점’ 변수를 제외하면 상당부분 중첩이 되기는 하나 보다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도 다각화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경찰관은 물론 일반인까지 포함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조사라는 점과 인권보호 의식 측정 변수를 ‘①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진단’과 ‘②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실현’ 등 두 유형으로 대별함으로써 위 선행연구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려야 할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써 그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회복시켜주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보다 범죄자 인권보호에 비중을 두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에서 소외시켜 왔던 인류의 형사사법 법제 발전의 역사에서 기인한 바 크다.⁷⁾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의 시행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의 규모가 확대되긴 하였지만 위 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2009년도에 범죄자 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의 비율이 2,140억 원 대 37억 원으로써 범죄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피해자보다 무려 57배 이상 많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범죄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5) 헌법 제37조 제2항

6) 박민식,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도서출판 선, 2011, 233쪽: 종래 형사사법 체계에서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중시해 온 이유도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해 무고한 피의자·피고인이 종종 인권침해를 당하곤 했기에 그러한 선의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이러한 국가권력 남용 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의자·피고인도 광의의 피해자 개념으로 포섭하게 되면 현 형사사법 체계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명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

7)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기준으로 형사사법 체계 발전의 역사를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 첫째는 피해자의 황금기(Golden Age)라고 일컫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던 고대시기를 말한다. 둘째는 피해자의 암흑기(Dark Age)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으로써 중세시대 이후부터 20세기까지를 말하는바, 이 때에는 국가가 범죄자 처벌에 전적인 책임을 지던 시기이자 범죄의 진정한 피해자는 국가라고 인식한 시기이다. 셋째는 피해자의 재부상(Reemergence of the Victim)의 시기인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역할과 다양한 피해자화의 양상이 재조명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로써 20세기 중반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Robert A. Jerin & Laura J. Moriarty, *The Victims of Crime*, Prentice Hall, 2010, pp. 6-7).

를 보여주고 있다.⁸⁾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이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⁹⁾ 형사사법제도의 존재 목적을 범인의 발견과 처벌이라는 ‘응보적 정의(應報的正義)’의 달성에만 두어서는 곤란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법적평화의 회복이라는 ‘회복적 정의(回復的正義)’ 달성에 그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¹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충실을 기한다는 것은 이러한 회복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제시되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책무를 이행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2.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의 중요성

언뜻 보기에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는 범인을 신속히 검거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및 보상체계를 구비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면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다고 해도 형사사법제도를 운용하는 종사자 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종사자들의 범죄피

8) 박민식, 앞의 책, 같은 쪽.

9) 유럽연합이 피해자 보호지침(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약칭 Victims' Directive라 한다)를 2012년에 제정하여 공포한 후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2015년 12월까지 자국법을 위지침에 따라 개정하거나 제정한 후 보고하도록 한 점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FRA, *Victims of crime in the EU: the extent and nature of support for victims*, 2014, p. 32).

10) John Braithwaite, *Restorative justice and a better future*. In *Restorative Justice Reader*. Willan Pub, 2002, p. 85.

해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미비하다면 관련 법률과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¹¹⁾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라는 궁극적 목적달성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인권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지원행정을 펼치는 주체들만 인권의식이 높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범죄피해자 자신도 현행 헌법과 법령 체계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잘 인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식을 사전에 갖추고 있다면 유사시 자신이 피해자가 될 때 그 권리를 보다 더 잘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범죄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모든 국민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3.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방법론

그렇다면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함양(涵養)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11)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그 치우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범죄피해자 인권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 간의 괴리현상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주기본권 보장이 핵심인바,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집행자와 제도 운영자들은 이 핵심가치가 제대로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의식이 깨어 있어야만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바른 인권의식은 바로 이러한 ‘핵심가치에 대한 각성’을 의미한다.

증진'이요, 둘째는 '범죄피해자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다. 전자는 인간내면의 인격적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인권의식의 본질을 이루는 한 요소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후자는 인권의식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미흡한 인권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틀로 작용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제도라는 것은 이들의 운전자인 인간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가질 때 더욱 그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인권의식의 발휘를 온전히 보장해 주지 못하기에 방법론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증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다.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의 함양은 바로 위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범죄피해자 보호행정의 기본철학으로 올바르게 정립해 나감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존중심을 전제한다. 타인에 대하여 존중심을 갖는 것은 인간존엄과 가치를 주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¹²⁾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작용에 있어서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근본규범이 되기에¹³⁾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이나 피해자 지원행정의 기초도 이를 바탕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은 동정심을 낳는다.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은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커질 수 있다. 동정심의 발휘가 곧바로 사회정의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범죄피해자 보호행정에 있어서 동정심과 자비가 없으면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는 실패

12) 헌법 제10조 참조: 김철수, 헌법 개설, 박영사, 2015. 105-106쪽.

1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992쪽.

할 수 있다.¹⁴⁾ 아울러 정확하게 측정된 응보적 정의만으로는 참다운 정의를 완성할 수 없어도, 응보적 정의와 더불어 동정심에 기초한 인간애(人間愛)가 더해진다면 법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정의는 완수(完遂)될 수 있다.¹⁵⁾

2) 범죄피해자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법률이나 관련 지침의 정립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업무의 충실한 이행과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자 관련법이 의도한 목적대로 잘 이행이 안 되는 1차적 원인으로서 법집행관의 인권의식이 저조한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지만 그 법집행을 충실히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불비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효율적 인력배치와 적정 예산의 확보, 범죄피해 보호 전문가의 양성 및 신규채용,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홍보체계 구축 및 가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의 설계 및 한계

1. 조사목적 및 연구대상의 설정

본 연구는 경찰관과 일반 시민의 한 부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

14) Christopher D. Marshall, *Compassionate Justice*, Cascade Books, 2012, p. 218.

15) Emil Brunner, / 전택부 역, *정의·사회질서*, 평민사, 1976, 177-179쪽.

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조사 대상자인 일반인은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대학생들로 한정하였고, 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재 1개 경찰서와 대구시 소재 2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 국한하였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경찰행정학부 및 심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총 11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바 그 중 100매를 회수(회수율 91%)하여 분석자료로 삼았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경상북도 1개 경찰서와 대구 시내 2개 경찰서에 150매가 배포되었는바 총 146매가 회수(회수율 97.3%)되었고 그 중에 3매가 무효 처리되어 143매를 유효한 분석 자료로 삼았다.

한편, 경찰관의 인권의식 변화의 추이를 추적해보기 위해서 2013년에 수행된 경찰관 대상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조사결과와¹⁶⁾ 2017년의 조사결과를 상호 대조해 보았다. 2013년에 조사에 응한 전국 경찰관의 수는 198명이었는데 그 중 결측치를 제외한 총 190명의 응답자 중 2017년 설문지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자 3명을 제외한 187명만을 최종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설문의 구성

대학생 설문지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개는 연

16) 김재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 21권 제1호, 2013, 16-19쪽.

령과 성별을 묻는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8개가 범죄피해자 권리의식의 진단 및 그 실현에 관한 질문으로 짜여져 있다. 이 8개의 항목 중에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조사에 있어서 관련성이 먼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경찰관 설문지는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4개 항목이 연령, 성별, 범죄피해자 관련부서 근무기간, 총 재직기간 등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8개 항목은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진단 및 인권의식 실현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들이다. 대학생 설문지와 경찰관 설문지에 공통으로 사용된 변수는 6개 항목이며, 경찰관 설문지에만 사용된 변수는 2개 항목이다.

3. 변수의 정의 및 분석방법

〈표 1〉 변수의 정의 및 분석방법

구분	대 학생		경 찰 관	
	변수 명	분석방법	변수 명	분석방법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진단	1. 인권보호 중점대상	-공통 변수 -대학생/경찰 상호 비교분석	1. 인권보호 중점대상	-공통 변수
	2. 형사절차 피해자 권리보장 수준		2. 형사절차 피해자 권리보장 수준	-대학생/경찰 상호 비교분석
	3. 경찰의 피해자 인권보호 수준		3. 경찰의 피해자 인권보호 수준	-2013/2017 경찰 비교분석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실현	4. 법적근거 인지	-공통 변수 -대학생/경찰 상호 비교분석	4. 법적근거 인지	-공통 변수 -대학생/경찰 상호 비교분석
	5. 정보제공 방식	-분석 제외	5. 경찰 피해자 인권보호 노력방향	-단독 분석
	6. 법률개정 방향	-분석 제외	6. 경찰 피해자 인권보호 장애물	-단독 분석

구분	대 학생		경 찰 관	
	변수 명	분석방법	변수 명	분석방법
	7. 정보제공 교육	- 공통 변수 - 대학생/경찰 상호 비교분석	7. 정보제공 교육	- 공통 변수 - 대학생/경찰 상호 비교분석
	8. 경찰 정보제공 수준	- 공통 변수 - 대학생/경찰 상호 비교분석	8. 경찰 정보제공 수준	- 공통 변수 - 대학생/경찰 상호 비교분석
기본사항	9-10. 학년, 성별	- 학년, 성별 교차분석	9-12. 연령, 성별, 관련부서, 근무기간, 재직기간	- 성별, 재직기간 교차분석

위 변수들은 크게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진단’에 해당하는 공통변수(①, ②, ③)와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의 구체적 실현’에 관련되는 변수(대학생의 경우 ④, ⑦, ⑧, 경찰의 경우 ④, ⑤, ⑥, ⑦, ⑧)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과 경찰관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공통의 변수 6개(①, ②, ③, ④, ⑦, ⑧)에 대하여는 각각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대학생의 설문 결과와 경찰관의 설문결과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대학생의 경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 조사와 거리가 먼 ⑤, ⑥번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경찰관의 경우에는 변수⑤(경찰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방향), 변수⑥(경찰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함에 있어서 장애물)에 대하여 대학생과 비교 없이 단독의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의 한계

우선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설문조사 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고 그 대상도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일반인의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대학생 외에도 주부,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중고교생, 농축산 어업 종사자 등 대상자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으나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학생들로만 한정하였고, 경찰관 역시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대구 관내 2개 경찰관서와 경북 관내 1개 경찰관서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 현 형사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과 법무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의 과소한 예산 배정과 같은 법적, 제도적 환경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에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일반인의 경찰관 인권보호 수준에 대한 조사도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일반 국민과 경찰관들의 의식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층 및 지방 경찰관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의 실태를 엿봄으로써 나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응하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IV. 조사결과 분석

1.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 진단

1) '인권보호의 중점대상' 분석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의자와 범죄피해자 중 인권보호의 중점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보면 대학생(59%)과 경찰관(65%)이 모두 피해자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그 결과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공직자와 일반인의 상호 인식 방향이

같은 것은 오늘날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표 2〉 인권보호의 중점대상 (대학생/경찰관 양자 비교)

	대 학 생		경 찰 관	
	빈 도	퍼 센 트	빈 도	퍼 센 트
피의자/피고인 중점	7	7.0	4	2.8
피해자 중점	59	59.0	93	65.0
양자 균형	34	34.0	46	32.2
합 계	100	100.0	143	100.0

주목할 만 한 점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2013년과 2017년의 응답의 비교 결과이다.¹⁷⁾ 2013년에는 범죄자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48.4%로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범죄자 인권보장 중점은 2.8%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경찰조직 전반에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3〉 경찰관의 인권보호 중점대상 (2013년/2017년 연도별 비교)

인권보호 중점대상	2013년		2017년	
	빈 도	퍼 센 트	빈 도	퍼 센 트
피의자/피고인 중점	92	48.4	4	2.8
피해자 중점	27	14.2	93	65.0
양자 균형	68	35.8	46	32.2
합 계	187	98.4	143	100.0

17) 2013년 설문조사서에는 '피의자/피고인 중점', '피해자 중점', '양자 균형' 외에 '모름'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던바 '모름'이라고 응답한 3명을 총 응답자 190명에서 제외한 187명만의 결과를 가지고 2017년 통계와 비교한 것이다(김재민, 위의 논문, 17쪽).

〈표 4〉는 경찰관의 성별 변수와 인권보호 중점대상 변수간의 교차분석을 시도한 2013년과 2017년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남자경찰관들의 과반수 이상(51.3%)이 피의자 중점으로 답했던 2013년과 비교할 때 2017년에는 남자 경찰관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피해자 중점'(70.5%)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여자 경찰관들은 2013년에 '양자 균형'의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40.8%) 2017년에도 여전히 '양자 균형'의 답변이 51.6%로 제일 많았다. 여자 경찰관의 경우에는 남자 경찰관보다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상호간에 인권보호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경찰관 성별* 인권보호 중점대상 (2013년/2017년 연도별 비교, 명)

	인권보호 중점대상						전체	
	피의자 중점		피해자 중점		양자 균형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남자	82 (51.3%)	3 (2.7%)	21 (13.1%)	79 (70.5%)	57 (35.6%)	30 (26.8%)	160 (100.0%)	112 (100.0%)
여자	10 (37.0%)	1 (3.2%)	6 (22.2%)	14 (45.1%)	11 (40.8%)	16 (51.6%)	27 (100.0%)	31 (100.0%)
전체	92	4	27	93	68	46	187	143

〈표 5〉는 경찰관의 재직기간이 인권보호 중점대상에 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013년도에는 10년-20년 미만과 20년 이상 등 장기근무한 경찰관일수록 피의자 인권보호를 중시해야 한다(54.7% 및 53.4%)는 견해가 높았으나 5년-10년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양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견해(44.2%)가 높았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각 기간별로 65.4%, 72.7%, 60%, 66.7%)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5〉 경찰 재직기간*인권보호 중점대상 (2013년/2017년 연도별 비교, 명)

	중점대상						전체	
	피의자 중점		피해자 중점		양자 균형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5년 미만	17 (48.6%)	1 (2.0%)	8 (22.9%)	34 (65.4%)	10 (28.5)	17 (32.6%)	35 (100.0%)	52 (100.0%)
5년-10년 미만	16 (37.2%)	0 (0%)	8 (18.6%)	16 (72.7%)	19 (44.2%)	6 (27.3%)	43 (100.0%)	22 (100.0%)
10년-20년 미만	35 (54.7%)	1 (2.2%)	5 (7.8)	27 (60.0%)	24 (37.5%)	17 (37.8%)	64 (100.0%)	45 (100.0%)
20년 이상	24 (53.4%)	2 (8.3%)	6 (13.3%)	16 (66.7%)	15 (33.3%)	6 (25.0%)	45 (100.0%)	24 (100.0%)
전 체	92	4	27	93	68	46	187	143

한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학년별 인권보호 중점대상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는 각 학년 모두 ‘피해자 중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전체의 59%), 그 다음이 ‘양자 균형’이었으며 (전체의 34%), ‘피의자 중점’이라는 견해는 7%에 불과하였다. 특히 2학년의 경우 ‘피의자 중점’으로 답한 학생은 전무하고 ‘피해자 중점’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6〉 대학생 학년별 인권보호 중점대상

		중 점 대 상			전체
		피의자 중점	피해자 중점	양자 균형	
학년	1학년	2 (13.3%)	8 (53.3%)	5 (33.3%)	15
	2학년	0 (0.0%)	22 (64.8%)	12 (35.2%)	34
	3학년	4 (14.2%)	15 (53.6%)	9 (32.1%)	28
	4학년	1 (4.3%)	14 (61.0%)	8 (34.7%)	23
전체		7 (7.0%)	59 (59.0%)	34 (34.0%)	100

〈표 7〉은 대학생 성별에 따른 인권보호 중점대상 의식조사를 집계한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피해자 중점’에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양자 균형’이라는 답변에 있어서는 남학생(30.2%) 보다 여학생(36.8%) 비율이 더 높았다. 인권보호 중점대상에 관한 경찰관 의식조사에 있어서는 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에 비해 ‘양자 균형’적 입장을 더 선호하고 있었음을 볼 때에 피의자 인권보호와 피해자 인권보호 중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보다 균형적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표 7〉 대학생 성별 인권보호 중점대상

		중 점 대 상			전 체
		피의자 중점	피해자 중점	양자 균형	
성별	남자	4 (9.3%)	26 (60.5%)	13 (30.2%)	43
	여자	3 (5.3%)	33 (57.9%)	21 (36.8%)	57
전체		7 (7.0%)	59 (59.0%)	34 (34.0%)	100

2) ‘수사재판에서의 범죄피해자 권리보장 수준’ 분석

수사와 재판과 같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대학생 응답자의 52%인 과반수 이상이 인권보장이 매우 열악하거나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을 한 반면, 경찰관 응답자의 경우에는 32.9%만이 부정적 응답을 하고 그보다 많은 34.3%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이는 긍정적 답변을 한 대학생이 15%에 불과한 것과 큰 대조를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이것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인식이 대학생과 경찰관 간에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수사·재판에서의 범죄피해자 권리보장 수준

	대 학생		경찰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열악	6	6.0	11	7.7
잘 보장 안됨	46	46.0	36	25.2
보통	33	33.0	47	32.9
잘 보장	14	14.0	39	27.3
매우 잘 보장	1	1.0	10	7.0
합계	100	100.0	143	100.0

3) ‘경찰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수준’ 분석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수준에 관한 응답도 대학생과 경찰관간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38%가 매우 낮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경찰관의 경우에는 부정적 응답

이 20.3%에 불과하였다. 긍정적인 응답은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대학생의 11%만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경찰관은 33.6%가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여 거의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여주었다.

〈표 9〉 경찰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수준

	대 학생		경찰관	
	빈 도	퍼 센 트	빈 도	퍼 센 트
매우 낮은 수준	5	5.0	5	3.5
낮은 수준	33	33.0	24	16.8
보통 수준	48	48.0	52	36.4
높은 수준	11	11.0	48	33.6
매우 높은 수준	3	3.0	14	9.8
합 계	100	100.0	143	100.0

2.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의 실현 여부

1)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 인지도' 분석

위 설문결과를 보면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숙지하여 피해자 정보권 활용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4%에 불과하였다. 주목할 점은 범죄피해자 권리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경찰관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7.7%에 불과하고 41.3%가 막연히 존재사실 자체만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나 인권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0〉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근거 인지 여부

	대 학생		경 찰 관	
	빈 도	퍼 센 트	빈 도	퍼 센 트
잘 모름	19	19.0	12	8.4
존재 사실 자체만 숙지	34	34.0	47	32.9
대강의 내용 숙지	43	43.0	73	51.0
구체적 내용 숙지	4	4.0	11	7.7
합 계	100	100.0	143	100.0

2) '정보제공 교육 이수 여부' 분석

본 '정보제공 교육 이수 여부' 변수는 앞서 살펴 본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생 전체 응답자의 57%, 경찰관 전체 응답자의 44.8%가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왜 다수의 대학생들과 경찰관들이 피해자 정보권의 법적 근거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

〈표 11〉 정보제공 교육 이수 여부

	대 학생		경 찰 관	
	빈 도	퍼 센 트	빈 도	퍼 센 트
없음	57	57.0	64	44.8
있음	43	43.0	79	55.2
합계	100	100.0	143	100.0

3) '경찰 정보제공 수준' 분석

〈표 12〉에서 대학생들의 경우 정보제공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13%인데 비하여 부정적 답변이 26%로써 부정적 견해가 강하고, 경찰관의 경우에는 긍정적 답변 37.8%, 부정적 답변이 16.1%로서 긍정적 견해가 강하여 상호 대조를 이룸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인과 경찰관 사이에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추진 및 실천에 관한 인식의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정책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2〉 경찰 정보제공 수준

	대 학생		경찰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제공 못함	0	0	2	1.4
잘 제공 못함	26	26.0	21	14.7
보통으로 제공 함	61	61.0	66	46.2
잘 제공함	6	6.0	43	30.1
매우 잘 제공함	7	7.0	11	7.7
합계	100	100.0	143	100.0

4) 경찰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방향'에 대한 분석

〈표 13〉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방향' 변수는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 응답결과이다. 생각건대 이 설문지 중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함양에 가장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항목은 '범죄피해

자에 대한 존중의식' 항목이라 할 것이다. 인간존엄의 가치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근본 철학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이 '존중의식' 항목에 대해서는 29.4%를 지지한 반면 제도상의 인권보호 수단인 '정보제공'에는 35.7%를 지지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도상의 정보제공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 경찰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방향

	빈 도	퍼 센 트
정보제공	51	35.7
존중의식	42	29.4
법률지식	16	11.2
연계 서비스 제공	34	23.8
합 계	143	100.0

5) 경찰의 '피해자 인권보호 활동에의 장애물'에 대한 분석

〈표 14〉도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범죄피해자 인권보호가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으로 경찰관들은 과중한 업무부담(42%)을 들었다. 과중한 업무부담의 가장 큰 원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력확보 및 예산 배분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경찰 지휘관들의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인식부족을 모든 선택지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답함으로써(12.6%)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본질적 접근보다는 제도적 개선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경찰의 피해자 인권보호 활동에의 장애물

	빈 도	퍼 센 트
지휘관/실무자 인식부족	18	12.6
예산부족	45	31.5
전문인력 미확보	20	14.0
과중한 업무부담	60	42.0
합 계	143	100.0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어

1. 정책적 시사점

1)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운동

위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관들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장애물로서 피해자에 대한 내면의 태도 형성보다는 외형적 제도나 정책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의 공감능력 결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자화를 야기 시키고 피해자의 정서적 고통을 간과하는 수사행태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크게 방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⁸⁾ 따라서 올바른 인권의식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8) Gerd F. Kirchhoff, *What is Victimology?.*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2005, p. 55.

UN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UN Declaration)이¹⁹⁾ 제4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동정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²⁰⁾ EU의 피해자 보호지침(Victims’ Directive)의 서문 제9조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상태를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과 즉각적 필요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²¹⁾ 피해자 정서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경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실무적 적용이 용이하고 효과성이 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찰관서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직장훈련 시간을 활용하여 청문감사관실 소속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범죄피해자전담 경찰관이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패사례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을 상세히 소개해 주어 반성을 유도하고 대표적 성공사례의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방법을 시행해 볼 만하다. 이와 함께 경찰관 전문화 교육에 반드시 범죄피해자 인권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시간에 ‘범죄피해 역할극’을 시연하거나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경찰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19) 이 ‘범죄피해자 인권선언’의 원 명칭은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약칭 UN Declaration)’이다.

20) John P.J. Dussich & Kieran G. Mundy, *Raising the Global Standards for Victims*,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ittute, 2008, p.184.

21)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2L0029>. (2017. 8. 10. 검색).

2) 인권보호 주체별 특화된 인권교육 시행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교육 대상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와 피해자 관련 민간단체 종사자, 더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 국민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국제규범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바, UN Declaration 제16조에서는 ‘경찰과 사법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기타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범죄피해자들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훈련과 적당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²²⁾라고 하고 있고, Victims’ Directive 제25조는 ‘피해자를 접촉하는 경찰이나 검사, 재판관, 변호사,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범죄피해자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수준에 맞는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²³⁾라고 하고 있다.

위 국제규범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체별로 인권교육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점,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검사·판사·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들도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되고 있다.

먼저 인권교육의 분야별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각 중앙부처별로 연도별 범죄피해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인권교육 시행결과를 통보받아 시행여부를 점검해 나가면 실효성이 있으

22) John P.J. Dussich & Kieran G. Mundy, 위의 책, p.186.

23) Victims’ Directive 제5장 제25조 1~5항 참조(<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2L0029>, (2017. 8. 10, 검색)).

리라 생각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긴급대응에 관한 교육은 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등이 합동으로 강력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의훈련을 시행해 보거나 기관 합동으로 공동포럼을 개최하여 상호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호 인지하고 해결책을 토론해 보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위한 인권교육에 있어서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보장에 관련된 해외 법령이나 판례, 수사사례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권장해 본다. 여기에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휘하는 경찰관리자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전국 경찰지휘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발제와 집단 토론 등을 통해 그들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해 낼 필요가 있다.

3) 업무의 효율적 배분과 전문인력의 확보

앞서 설문응답에서 보았듯이 경찰관들은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의 장애물로 '업무과중'을 들었다. 이 문제점 해소가 범죄피해자 인권 의식 함양에 직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관의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업무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문제를 한 가지 살펴보면 경찰청이 2015년 2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업무가 피해자심리전문요원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어 업무분담 및 상호협력관계가 모호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²⁴⁾ 경찰청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심

24) 김지선·김성언, 앞의 책, 258쪽.

리학 전문가를 선발하는 만큼 피해자의 정서적 위기개입 부분은 이들이 전담하도록 업무분담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업무의 효율적 배분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과 피해자심리전문요원과 같은 전문가 인력의 확보도 당연히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각 지방경찰청에 고작 1~2명 배치되어 있을 뿐이고, 2014년의 경우 1인의 전문요원이 담당해야 할 강력범죄건수가 연간 약 10,711건으로서 1일 평균 29.3건에 이르렀으며, 인력부족으로 야간에 상주할 여건도 못되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²⁵⁾ 이에 객관성 있는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증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증액을 요구해야 하며, 경찰청에서는 철저한 업무분석 및 업무진단을 통해 타 부서 과잉인력을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로 재배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앞서 연구결과에서 본 것처럼 대학생과 경찰관 사이에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수준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교육이 그다지 용

25) 김지선·김성언, 위의 책, 257쪽.

이하지 않다는데 있다.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들은 각 급 학교의 사회 교과목이나 교양 교과목에 범죄피해자 권리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시킬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나 검찰관서 담당자가 범죄예 방교실을 운영하면서 특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학생 이외의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집체 교육이 용이하지 않기에 언론매체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간접적 교육효과를 거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KBS와 같은 공영방송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범죄피해자 권리의 내용, 피해자 지원 체계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정기적으로 내보냄으로써 대국민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민영방송과 종합편성 채널들도 정부부처와 MOU를 맺거나 민관(民官)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을 높이는 공익광고를 편성해 방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결 어

위 경험적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이 2013년과 비교할 때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 인권의식의 구체적 실현은 아직 미진한 수준에 놓여 있고,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수준에 관하여 일반인(대학생)들과 경찰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현직 경찰관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격존중과 같은 본질적 사항보다는 제도 개선과 같은 외형적 조건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인권의식 함양 방안으로서 공감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인권보호 주체별 특화된 인권교육 시행,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전문인력 증원,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적극적 홍보 등을 제시해 보았다.

생각건대 범죄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법의 본질은 범죄피해자라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데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하였는데²⁶⁾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분야가 바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은 인간애(人間愛)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인권보호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사회정의(社會正義)'의 통화(通貨)로 변경하는 작업이기도 하다.²⁷⁾ 범죄피해자를 접촉하는 자들이 인간애에 바탕을 둔 올바른 인권의식을 행동으로 발현해 나감으로써 범죄피해자들로 하여금 범죄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되찾게 해 준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를 '회복적 정의의 완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접수 : 2017. 8. 16, 심사 개시 : 2017. 8. 23, 게재 확정 : 2017. 9. 22〉

26) 최종고,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72, 96-97쪽.

27) Brunner, Emil, 앞의 책, 176쪽.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김상희·조병인,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90-06, 1991.

김지선·김성인,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A-03, 2015.

김철수, 헌법 개설, 박영사, 2015.

박민식,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도서출판 선, 201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최종고,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72.

2. 논문

김재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3.

설충기, “경찰관의 인권의식 조사를 통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효화 방안”,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2014.

정의롬, “경찰관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11.

II. 외국문헌

Braithwaite, John, *Restorative justice and a better future*. In Restorative Justice Reader, Willan Pub, 2002.

- Dussich, P.J. John. & Mundy, G. Kieran. *Raising the Global Standards for Victims*.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ittute, 2008.
- Emil Brunner, / 전택부 역, 정의·사회질서, 평민사, 1976.
- FRA, *Victims of crime in the EU: the extent and nature of support for victims*, 2014.
- Jerin, A. Robert & Moriarty, J. Laura, *The Victims of Crime*. Prentice Hall, 2010.
- Kirchhoff, F. Gerd. *What is Victimology?*,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2005.
- Marshall, D. Christopher, *Compassionate Justice*, Cascade Books, 2012.

Ⅲ. 기타

-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1500204> (2017.8.10.검색).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2L0029>. (2017.8.10. 검색.)
- <http://www.nocutnews.co.kr/news/4822014> (2017.8.10.검색).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Protecting Human Rights among Police Officers and University Students

Kim, Jae – Min

If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to crime victim is established correctly, not only the police officer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victim policie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can properly exercise their legal rights, overcoming their damage. On the basis of i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onsciousness of them, carrying out an empirical research to ge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like the following : Police officers'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for crime victims is higher than that of 2013, but the realization of it is still low;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college students) and the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level of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crime victims; The current police officers are mo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 external conditions such as system improvement than the essential matters like respecting the personality of crime victims.

To solve the problems, the programs to develop empathy, th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to respond to the subjects' needs, the effective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and the active promotion toward

the public should be exercised.

If the victims of the crime are set free from the suffering of damage of crime, with the help of people who contact them, arming with humanity, we can call it as 'the completion of restorative justice'.

◆ Key Words : Crime Victim, Human Rights Protection,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